

시행규칙 (EU) 2020/916

유럽 의회와 이사회 규정 (EU) 2015/228에 근거하여 자일로올리고당을 신소재 식품으로 사용을 연장하고 개정위원회 시행규정 (EU) 2017/2470에 따라 승인함.

개정내용

시행 규정 (EU) 2017/2470의 부록의 표 1의 '자일로올리고당' 항목(승인된 신소재 식품)은 다음과 같이 개정됨:

승인된 신소재식품	신소재 식품 사용 조건	
	지정된 식품 카테고리	최대 허용량(**)
자일로올리고당	식빵	14 g/kg
	통밀빵	14 g/kg
	아침식사용 시리얼	14 g/kg
	비스킷	14 g/kg
	두유	3.5 g/kg
	요거트(*)	3.5 g/kg
	과일 스프레드	30 g/kg
	초콜릿 과자류	30 g/kg
	2002/46/EC에 정의된 식품보충제	2 g/day

(*) 유제품에 사용될 때 자일로올리고당은 유성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 할 수 없음.
(**) 분말형태 1의 사양에 따라 계산된 최대 레벨

시행일 : 2020. 7. 21